

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

'24. 4. 22.(월) 10:00

의회운영위 회의실

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

# 검 토 보 고 서

(의 회 사 무 처)



의회운영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I.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## 1. 제출경위 및 편성요건

-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제출일 : 2024. 4. 12.
- 회부일 : 2024. 4. 12.
-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

# II. 추가경정예산안 현황

## 1. 세입예산안

- 세입예산 조정에 따라 기정 세입예산 297억 원 대비 47억 원 (15.82%)이 감액되어 250억 원이 편성되었음

## 2. 세출예산안

-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이하추경안)은 기정예산 592억 8,813만 원 대비 1.00%, 5억 9,627만 원이 증액된 598억 8,441만 원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59,884,410	59,288,137	596,273	1.00%
사 업 비	48,765,234	48,377,034	388,200	0.80%
행 정 운 영 경 비	10,159,176	9,951,103	208,073	2.09%
재 무 활 동	960,000	960,000	0	0%

### Ⅲ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#### 1. 세입예산안 검토

-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으로 특이사항 없음

#### 2. 세출예산안 검토

##### 가. 총괄

-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592억 8,813만 원 대비 5억 9,627만 원(1.00%)이 증액되어 598억 8,441만 원이 편성되었음
-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,  
사업비는 기정예산 483억 7,703만 원 대비 3억 8,820만 원 (0.80%)이 증액되어 487억 6,523만 원이 편성되었고,  
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99억 5,110만 원 대비 2억 807만 원 (2.09%)이 증액되어 101억 5,917만 원이 편성되었음

## 나. 주요사업별 검토

### (1)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[2억 1,000만 원 증액]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‘충청북도 의정비 심의 위원회’에서 ‘2024~2026년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비’ 지급액을 변경 결정했으며, 이에 맞춰 2024년 의정활동비 2억 1,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
  - 의정자료수집, 연구비 : 월 1,200,000원 → 월 1,500,000원
  - 보조활동비 : 월 300,000원 → 월 500,000원
-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,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과 함께 지급되는 비용으로, 관련 시행령 개정과 공청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됨

### (2)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[2,000만 원 증액]

-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외국의 각종 시찰, 견학, 참관,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비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
- 원·달러 환율 및 물가 상승, 2023년도 대비 예산 삭감(△1,000만 원), 국제교류방문 국가 증가(1→2개소) 등에 따라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,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부족분 2,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### **[3] 의정홍보광고료(5,000만 원 증액)**

-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주요 추진 시책 및 의정활동 사항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(주요 일간지, TV·라디오, 통신사, 인터넷신문, 지역주간 신문사 등 84개소)을 통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
-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광고 단가 현실화를 통한 방송 주요 시간 및 신문 주요면 광고 게재가 필요해 보이며, 이를 고려한 광고비 5,000만 원 증액 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매체별 주요 소비층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### **[4] 도의회 신청사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방송설비 구축**

**[시설비 2억 1,418만 원 감액,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,418만원 증액]**

- '25년 준공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에 인터넷방송 시스템 및 방송설비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이 완료('24년 2월)됨에 따라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방송설비 구축 사업비와 관련 정수 물품 목록 및 예산이 산출되었음
- 산출된 예산에 맞게 세부사업 내에서 시설비 2억 1,418만 원 감액,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,418만 원 증액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## **(5) 명예퇴직수당(2억 원 증액)**

- 『지방공무원법』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
- 상반기 중 (수시)명예퇴직 희망자가 발생하여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명예퇴직수당 제도 운영을 위해 2억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, 관련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수시 명예퇴직자 발생은 그 예측이 어렵고 사안 발생 시기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보다 안정적인 명예퇴직수당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